

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4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6. 4. 10.
발의 의원 : 박유서의원외 6명

1. 제안이유

- 경상북도시·군의회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(2006. 1. 12. 도조례 제2902호)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정수를 의원정수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.
-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의 호칭을 그 위상과 역할에 맞게 변경하고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의 진행이 불가하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정족수만 충족되는 경우 회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- 경상북도시·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의원 정수가 19명에서 14명으로 5명 감소(안 제2조)
 - 운영위원회 정수를 7명에서 6명으로 조정
 - 총무위원회 정수를 9명에서 7명으로 조정
 - 산업건설위원회 정수를 9명에서 6명으로 조정

(제104- 운영 제1차)

-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의 흐정을 부위원장으로 변경
(안 제11조)
- 위원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 (안 제11조)

3. 자치법규안 : 불임

4. 신구대비표 : 불임

5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(발췌) 1부

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영주시의회위원회조례”를 “영주시의회 위원회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7”을 “6”으로 하고, 제2호 중 “9”를 “7”로 하며 제3호 중 “9”를 “6”으로 한다.

제11조 제목 및 제1항 중 “간사”를 “부위원장”으로 하고, 제2항의 “간사는”을 “부위원장은”으로 하며,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◎

신·구 대비표

【영주시의회위원회조례】

현 행	기 정 안	기경이유
<u>영주시의회위원회조례</u>	<u>영주시의회 위원회조례</u>	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	제1조(목적) 「 <u>지방자치법</u> 」	
제2조(상임위원회설치) (생략)	제2조(상임위원회설치) (현행과 같음) 1. : 6... 2. : 7... 3. : 6...	경상북도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임 위원회 정수를 의원정수에 맞게 조정하고 내용 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제11조(간사)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. ② <u>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</u> ③ <u>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.</u>	제11조(부위원장) ① 부위원장 ② 부위원장은 ③ <u>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.</u>	간사의 호칭을 변경하고,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 대리를 정하여 원활한 회의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함.

관 련 법령(발췌)

【 경상북도시·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】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경상북도 시·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)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·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와 같이 한다.

[별표]

영주시 의원정수 14인(비례대표 2, 지역구 12)		
영주시“가”선거구	3	풍기읍, 순흥면, 단산면, 부석면
영주시“나”선거구	3	상망동, 하망동, 영주1동, 영주2동, 가흥2동
영주시“다”선거구	3	이산면, 평온면, 문수면, 장수면, 안정면, 봉현면
영주시“라”선거구	3	휴천1동, 휴천2동, 휴천3동, 가흥1동

【 경기도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】

제11조의2(직무대리) 위원장과 간사가 동시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출석위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<신설 2003.09.23>

【 경기도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】

제11조 (간사)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.
②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
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
④상임위원회 개의 후 위원장 및 간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.

<신설 2004.1.31>

【 충남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】

제10조의 2(위원장의 직무대행) ①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②위원장과 간사가 동시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(본조신설 1998. 11. 16)